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5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년 9월 3일

나. 제 안 자 : 김현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0년 9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0. 9.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희 의원)

□ 제안이유

우리 구 내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실현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 청소년,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라.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추진 사업을 규정(안 제4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소년 기본법」제8조

2)「근로기준법」제64조제1항

나. 협조부서 : 교육청소년과

다. 입법예고(2020. 9. 4. ~ 2020. 9. 8.)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제정 취지

본 제정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근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근로 권리 취약계층인 청소년이 근로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 제정내용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근로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설명함(안 제1조)

○ "근로 청소년" 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며[1],「근로기준법」제64조제1항에[2] 따라 이 조례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연령은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근로 청소년으로 한정됨

※ 강서구 청소년 인구현황 <참고자료> (2020년 8월 기준)

구분	인구수(명)	비율
강서구 전체	584,920	-
청소년 인구수(9세~24세)	85,079	14.5%
근로가능 청소년 인구수(15세~24세)	59,154	10.1%

1) 청소년에 대한 개별법 정의
- 청소년기본법 : 9세~24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19세 미만

2)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음(안 제3조)

○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정책 홍보, 교육 및 상담, 권리구제 지원체계 구축 등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안 제4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경비 등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음(안 제5조)

○ 구청장이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근로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두개의 부서(교육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가 관련된 상황이므로 사업추진시 각자의 소관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 아울러 근로감독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고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